



2020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합니다

완산여고 교육통신



<http://www.wansan.hs.kr>

교무실 : 063)227-4452

행정실 : 063)227-4459

공교육 정상화법 관련 선행교육 금지 안내

1. 관련: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따른 특별법 [시행 2014.9.12.]

[법률 제12395호, 2014.3.11. 제정]

2. 목적

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·중·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「교육기본법」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

3. 내용

가. "선행교육"이란 교육관련기관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(이하 "국가교육과정"이라 한다) 및 교육감이 정한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(이하 "시·도교육과정"이라 한다)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제 1항에 근거하여 편성·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(이하 "학교교육과정"이라 한다)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.

나. "선행학습"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, 시·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

다. 학부모의 책무 :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

라. 교원의 상담활동: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,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.

마.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관련

1)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·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,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.

2) 학교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지필평가,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

-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2020. 11. 24.

완산여자고등학교장(직인생략)